심 사 보 고 서

충청북도 종자산업의 육성과 직무육성품종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종자산업의 육성과 직무육성품종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46

2022. 12. 16.(금)
산업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 박경숙 의원 등 7인

나. 제출일자 : 2022년 11월 14일

다. 회부일자 : 2022년 11월 16일

라. 상정일자 : 제405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 (2022년 12월 2일 상정의결)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박경숙 의원)

가. 제안이유

○ 이 조례의 관계 법률인 「종자산업법」에 규정된 품종보호 관련 절차 규정이 별도의 「식물신품종 보호법」으로 제정(2013. 6. 2.)됨에 따라 조례에 인용된 법 조항과 내용 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및 문장부호 등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이 조례의 관계 법률을 구분하여 관련 조항에 명시하고, 용어의 뜻을 명확히 함(안 제2조)

○ 산림환경연구소의 품종보호권 설정등록을 추가로 규정함(안 제6조)

○ 비밀누설 관련 규정의 자구를 수정함(안 제23조)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및 문장부호 등을 정비함(안 제3조, 안 제8조 ~ 안 제10조, 안 제16조, 안 제1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산업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신복순)

가. 제출배경

○ 이 조례의 관계 법률인 「종자산업법」에 규정된 품종보호 관련 절차 규정이 2013년 6월 별도의 「식물신품종 보호법」으로 제정됨에 따라 조례에 인용된 법 조항과 내용 등의 개정이 필요하고, 그 밖에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문장부호 등 정비소요가 있음

나. 개정안의 주요 조항에 대한 의견

○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이 직무육성품종을 보호하는데 있으므로, 이에 보호 관련 용어를 추가하여, 조례의 목적을 명확히 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됨

○ **안 제2조**는 이 조례에서 근거 법률로 사용되는 「종자산업법」과 「식물신품종 보호법」을 명시하여 용어의 뜻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고자 한 것으로 적절한 개정이라고 판단됨

○ **안 제6조**는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에 관한 사항으로 산림환경연구소의 무궁화 등 직무육성품종에 대한 보호 관리와 승계 설정을 위해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도내 식물신품종 보호를 위해 필요한 개정이라고 판단됨

○ **안 제9조**는 수의계약 신청에 관한 사항으로 문맥을 수정하여 자연스럽게 자구를 수정하고, 잘못된 문장부호를 바로잡은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됨

○ **안 제23조**는 비밀누설 등에 관한 사항으로 현행 조례에 명시된 ‘종자산업법 제172조’는 이미 2014년 전부개정과 함께 삭제된 조항으로 실효성이 없어 비밀누설과 도용을 하지 못하도록 자구를 수정한 것으로 타당성이 있음

○ 그 밖에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와 문맥 수정 등 조례를 정비하였음

다. 종합의견

○ 이 조례안은 관계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도 현실에 맞도록 품종보호에 관한 사항을 개정함과 동시에,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률적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충분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종자산업의 육성과 직무육성품종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 종자산업의 육성과 직무육성품종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종자산업의 육성과 직무육성품종 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종자산업법」에 따라 충청북도”를 “충청북도”로, “개발·공급을”을 “개발·공급과 보호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이란”을 “이란 「종자산업법」 제2조제2호에 따라”로, “전시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전시 등을 하거나 이와 관련된 산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이란”을 “이란 「식물신품종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1항에 따라”로, “품종으로서”를 “품종이”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이란”을 “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라”로, “부여하는”을 “주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 “실시”란”을 “ “실시”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별지 제1호서식]을”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직무육성품종신고서를”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 도지사는 품종보호출원이 인정된 경우 직무육성품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도지사 명의로 품종보호권을 설정등록 하여야 한다. 다만 옥수수 품종의 관리 및 승계는 농산사업소가, 산림품종의 관리 및 승계는 산림환경연구소가 한다.

1. 품종보호권자: 도지사
2. 관리기관: 농업기술원, 농산사업소, 산림환경연구소

3. 승계기관: 농업기술원, 농산사업소, 산림환경연구소

제8조제1호 중 “필요 하여”를 “필요하여”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수의계약 신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도유품종보호권의 처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수의계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도유품종보호권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2.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양도대금견적서나 실시료견적서 1부

제10조 중 “제8조”를 “제8조 각 호외의 부분”으로, “일반경쟁입찰에 따라”를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으로”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한번”을 “한 번”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제14조와 제15조에 따라”를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으로, “각각 분할 지급”을 “지급”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설치 · 운영 한다”를 “설치 · 운영한다”로 한다.

제23조 중 “자가”를 “사람은”으로, “도용한 경우에는 「종자산업법」 제172조에 따른다”를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종자산업법」에 따라 충청북도의 종자산업을 육성하고 직무육성품종의 개발·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충청북도---------- ---------- 개발·공급과 보호를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종자산업”이란 종자를 육성·증식·생산·조제·양도·대여·수출·수입 또는 전시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1. --------이란 「종자산업법」 제2조제2호에 따라 ---------- ---------- 전시 등을 하거나 이와 관련된 산업--.
2. “직무육성”이란 공무원이 육성하거나 발견하여 개발한 품종으로서 그 성질상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품종을 육성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현재나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것을 말한다.	2. --------이란 「식물신품종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1항에 따라 --- 품종이 ---------- ---------- ---------- ----------.
3. “품종보호권”이란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게 부여하는 권리를 말한다.	3. ----------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라 ---------- -- 주는 ----------.
4. “실시”란 보호품종의 종자를 증식·생산·조제·양도·대여·수출·수입하거나 양도나 대여를 청약(양도나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실시”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라 ---------- ---------- ---------- ---------- ----------.

현 행	개 정 안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제3조(직무육성품종의 신고) ① 직무상 신품종을 육성한 공무원(이하 “직무육성자”라 한다)은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조(직무육성품종의 신고) ① ---------- -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직무육성품종신고서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 도지사는 품종보호출원이 인정된 경우 직무육성품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도지사 명의로 지체 없이 품종보호권을 설정등록 하여야 한다. 단, 옥수수 품종의 관리 및 승계는 농산사업소가 한다. 1. 품종보호권자 : 도지사 2. 관리기관 : 농업기술원, 농산사업소 3. 승계기관 : 농업기술원, 농산사업소	제6조(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 도지사는 품종보호출원이 인정된 경우 직무육성품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도지사 명의로 품종보호권을 설정등록 하여야 한다. 다만 옥수수 품종의 관리 및 승계는 농산사업소가, 산림품종의 관리 및 승계는 산림환경연구소가 한다. 1. 품종보호권자: 도지사 2. 관리기관: 농업기술원, 농산사업소, 산림환경연구소 3. 승계기관: 농업기술원, 농산사업소, 산림환경연구소
제8조(도유품종보호권의 처분방법) 도유품종보호권의 처분은 일반경쟁입찰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제8조(도유품종보호권의 처분방법) ----------. ----------
1. 도유품종보호권의 실시에 있어서 특정인의 기술이나 설비가 필요 하여 일반경쟁입찰에 부칠	1. ---------- 필요하여 ----------

현 행	개 정 안
수 없을 경우	----------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제9조(수의계약 신청) 제8조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도유품종보호권의 처분을 받고자 하는 자는 수의계약신청서[별지 제2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도유품종보호권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별지 제3호서식] 1부 2. 양도대금견적서나 실시료견적서[별지 제4호서식] 1부	제9조(수의계약 신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도유품종보호권의 처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수의계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도유품종보호권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2.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양도대금견적서나 실시료견적서 1부
제10조(처분의 공고) 도지사는 제8조 본문에 따라 일반경쟁입찰에 따라 도유품종보호권을 처분하려면 입찰기일 30일전까지 해당 도유품종보호권의 품종명칭, 처분의 종류, 입찰 일시와 장소, 입찰참가자격 등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보·도보 또는 인터넷(도와 농업기술원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처분의 공고) ------ 제8조 각 호외의 부분 ---------- -------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으로 ---------- ---------- ---------- ---------- ---------- ---------- ----------.
제14조(등록보상금) ① (생 략)	제14조(등록보상금) ① (현행과 같음)
② 등록보상금은 동일한 직무육성품종에 대하여 한번만 지급하여야 한다.	② ---------- ---------- 한 번---------- ----.

현 행	개 정 안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6조(보상금 등의 지급) ① 도지사는 제14조와 제15조에 따라 등록보상금이나 처분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직무육성자가 두 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따라 각각 분할 지급하여야 한다.	제16조(보상금 등의 지급) ① ----------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 지급----------.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위원회의 설치) ① 도지사는 직무육성품종의 장려, 품종보호권 등의 처분 등을 위하여 충청북도 종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 운영 한다.	제18조(위원회의 설치) ① ---------- 설치 · 운영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3조(비밀누설 등) 도 소속 공무원, 위원회위원, 그 직에 있었던 자가 그 직무상 알게 된 품종보호 출원중의 품종에 관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에는 「종자산업법」 제172조에 따른다.	제23조(비밀누설 등) ---------- 사람은 ----------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관련법령 발췌

□ 종자산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종자산업”이란 종자와 묘를 연구개발 · 육성 · 증식 · 생산 · 가공 · 유통 · 수출 · 수입 또는 전시 등을 하거나 이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품종보호권”이란 이 법에 따라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게 주는 권리를 말한다.

7. “실시”란 보호품종의 종자를 증식 · 생산 · 조제(調製) · 양도 · 대여 · 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28조(공무원의 직무상 육성 등) ① 공무원이 육성한 품종이 성질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품종을 육성한 행위가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육성(이하 “직무상 육성”이라 한다)일 경우에는 그 품종에 대한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해당 공무원의 권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한다. 다만, 「고등교육법」에 따른 국립학교 또는 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상 육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이 승계한다.

제134조(비밀누설죄 등) 농림축산식품부 · 해양수산부 직원(제129조에 따라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그 위임받은 기관의 직원을 포함한다), 심판위원회 직원 또는 그 직위에 있었던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품종보호 출원 중인 품종에 관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였을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 3. 23.>

□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육성품종”이란 공무원이 육성하거나 발견하여 개발(이하 “육성”이라 한다)한 품종으로서 그 성질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품종을 육성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것을 말한다.
2. “국유품종보호권”이란 「식물신품종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 명의로 등록된 품종보호권을 말한다.

비용추계 첨부제외 사유서

○ 첨부제외 관련규정

-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 제4항제1호

○ 사 유

- 조례안의 개정 내용은 관계 법령 명칭 및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및 띄어쓰기 등 기술적인 정비 사항임
- 위 관련 규정에 따라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 결론적으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함